

## ●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-11호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2월 12일

광주전파관리소장

###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

- 법적근거: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
- 법령위반사항: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
-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: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, 2개월, 허가취소
- 처분 기간(일자): 2026. 3. 3. ~ 2026. 4. 2. / 2026. 3. 3. ~ 2026. 5. 2. / 2026. 3. 3.
- 처분대상

허가번호	호출명칭 (부호)	시설자명	주소	비고
42-2011-10-0000066	177광*호	이*자	인천광역시 연수구 계림로	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
42-2022-30-0000407	620현*호	장*윤	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	
42-2021-30-0000441	617일우호	박*현	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울포길	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
42-2018-30-0000394	691금*호	윤*인	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만송로	무선국 개설허가 취소

#### 6. 유의사항

- 가.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.
- 나.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.
- 한국방송통신진흥원 전남본부 ☎062-383-5070
  - 한국방송통신진흥원 목포사업소 ☎061-242-1404
  - 한국방송통신진흥원 여수사업소 ☎061-641-5500
- 다.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(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라.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행정심판([www.simpan.go.kr](http://www.simpan.go.kr))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- 마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(☎ 061-330-6838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